



시민 여가·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
2023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(대관) 운영지침



서부공원여가센터
(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)

시민 여가·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

2023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(대관) 운영지침

<주요 변경사항>

1. 공시지가 변경에 따른 T0 장소사용료 인상

– 문화마당 : 139,743원⇒151,443원, 나무데크 : 18,100원⇒19,616원(시간당)

2. 모든 행사에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진행요원 안전교육 실시

3. 문화마당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

- 순간 최대 1천명 이상의 행사 등에 마포구 안전관리 심의 요구
- 순간 최대 1천명 이상의 행사 보험가입 및 종합안내소 설치
- 차량 진입로에 차량 통제 요원 필수 배치
- 1일 이용객 2천명 이상의 행사 이동화장실 설치

4. 장소사용 세부 절차 및 시설 이용 안내 제공

I

관련 근거

- 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
- 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, 별표3 공원시설 이용료
- 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문화마당 공시지가
- 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
- ☐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
- 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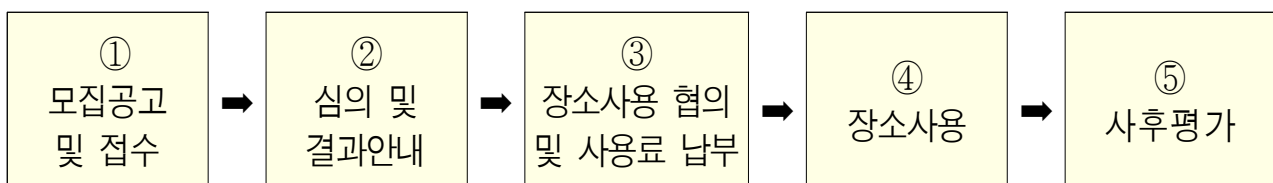
장소 사용 공간

연번	위치	장소	면적	행사 종류(예시)	비고
1	T0	문화마당	7,620m ²	축제, 장터 등 다양한 행사 가능	야외
2		나무데크	987m ²	축제, 장터 등 다양한 행사 가능	야외
3	T1	파빌리온	441m ²	워크숍, 실험극, 전시 등	실내
4	T2	공연장	608m ²	공연, 세미나, 강연회 등	실내
5		야외무대	1,226m ²	야외공연, 영화상영 등	야외
6	T4	복합문화 공간	984m ²	다원예술, 전시 등	실내
7	T6	문화 아카이브	659m ²	회의, 워크숍, 세미나, 전시 등	실내
8		옥상마루	157m ²	공연, 촬영 등	야외
9		원형회의실	164m ²	공연, 세미나, 회의, 간담회 등	실내
10		강의실	128m ²	강의, 회의, 세미나 등	실내
11		창의랩	106m ²	강의, 회의 등	실내

Ⅲ

운영 절차 및 방법

☐ 운영 절차



□ 모집

- 정기 모집 : 다음 해 연간 장소사용 모집(연1회)
- 수시 모집 : 정기 모집 후 미사용 일에 대한 추가 모집(필요시)

□ 심의

○ 심의위원회 구성

- 위 원 장(1) :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
- 내부위원(3) :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, 문화기획팀장, 공원관리팀장
- 외부위원(4인 이내) : 문화예술, 여가, 축제 관련 전문가 등

○ 심의위원회 운영

- 정기 및 수시 모집에 따른 심의 시
- 원안 승인, 조건부 승인, 승인 불가로 구분하여 안내
 - ※ 소규모 행사의 경우 내부위원으로 구성 심의 가능

○ 사전 심의

- 중복 날짜 신청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
- 전년도 행사 시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 유무 검토
-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등이 우려되는 행사 검토

○ 세부 심의

- 행사의 공공성 및 공원과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
- 행사장 배치, 시설물 설치, 진행요원 배치, 인력계획 등
-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행사(영업배상책임)보험 가입
- 안내소 운영 및 시민 안내에 관한 사항
- 소음 등 민원 대처에 관한 사항
- 공원 입구 차량 혼잡에 관한 사항
- 행사장 원상복구 및 청소에 관한 사항
- 쓰레기 발생량 최소화 등에 관한 사항

☐ 사후 평가

- 준수사항 이행 여부
- 민원 응대, 행사장 질서 및 안전관리
- 사고발생 시 처리, 행사장 원상복구 이행 여부 등

IV

장소사용 승인 및 취소 기준

☐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 기준

- 서울시 주최 행사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
-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성이 있는 행사
- 공원, 생태, 문화, 예술 관련 행사
-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사

☐ 장소사용 승인불가 기준

-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행사와 일정이 겹칠 때
-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
-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(수목 및 시설물 훼손 등)
- 공익, 공원 질서와 안전,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
 - 시설물 과다 설치 및 폐기물 발생이 많은 행사 등
- 소음 발생 등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는 행사
 - ※ 소음 기준: 주간 65dB이하, 야간(18:00~) 60dB이하

☐ 장소사용 승인 취소 기준

-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

- 사용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
- 공원시설의 안전 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
- 시민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상 필요한 경우
-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지침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
-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소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V

사용료

☐ 사용료 산정

- 장소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며 [붙임1]의 범위 내에서 정함
 - 시설물 설치 시간부터 시설물 철수시간(청소완료)까지 사용료 산정

☐ 사용료 부과

- 장소 및 장비사용료는 서울시 납부고지서에 의거 사용료 부과
- 소규모 촬영의 경우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
- 고지서 발급 후 15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장소사용 승인이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는 사용일 전날까지 납부
- 입장권 판매 행사는 판매수입의 10%를 사용료로 추가 납부
 - ※ 장소사용료, 장비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

☐ **사용료 환불**

- 신청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할 경우 잔여일수에 따라 환불 가능
- 인터넷 예약 등으로 사전 납부된 입장료·사용료는 [붙임 2]의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. 다만, 상재해(황사·호우·태풍주의보 등)와 공원 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용 당일에도 취소 및 환불 가능

VI

사용자의 의무

☐ **장소 원상복구의 의무**

- 설치한 시설물과 홍보물은 사용승인 종료시간 까지 원상복구해야 함

☐ **사용자의 변상책임**

- 사용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

☐ **양도 및 전대의 금지**

-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

VII

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

☐ **대상**

- 순간 최대관람객 1천명 이상의 옥외행사, 지역축제, 야외공연
- 불, 폭죽, 석유류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
- ※ 순간 최대관람객 기준 : 행사장 내 1시간 동안 관람객 수

☐ 방법

- 개최 30일 전까지 마포구(도시안전과)로 공문 제출
- ※ 야외 공연의 경우 마포구(문화예술과)로 재해대처계획 신고

☐ 보험가입

- 대 상 : 참가자, 관람객, 진행자 등 축제 관계자
- 가입금액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금액 이상
- ※ (사망)1억5천만원, (부상)최대 3천만원, (후유장애)장애급별 최대1억5천만원

☐ 행사장 내 안전관리책임자 실명 공개

- 현수막, 전단 등에 안전관리책임자 성명, 연락처 공개

VIII

감염병 유행에 대한 조치

☐ 방역 조치

-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, 출입 금지 및 통행 차단 가능

☐ 예방 조치

-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
- 행사 운영자 및 참여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음
-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·수령을 금지하거나 그

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

-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·이동을 제한·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해 폐기,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
- 사용한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쓰레기장과 화장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음

[붙임1] 문화비축기지 장소 및 부대 사용료

○ 문화마당 사용료

시설명	공간용도	사용면적	금액(원)	단가기준	비 고
T0	문화마당	7,620㎡	151,443 (1시간)	일반 주거지역	○ 3,482천원×0.05(요일)/365일/24시간×면적 ○ 2022년 공시지가 기준(성산동 661) ※ 이 외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적용
	나무테크	987㎡	19,616 (1시간)	일반 주거지역	

○ 공원시설 사용료

시설명	공간용도	사용면적	금액(원)		비 고
			기본금액	추가금액	
T1	파빌리온	441㎡	44,100 (1시간)	야간 30%	○ 공연장, 복합문화공간은 1일 최대 8시간 부과 ○ 부대시설, 장비 사용료 별도
T2	야외무대	1,226㎡	100,000 (2시간)	야간 100%,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%할인	
	실내공연장	608㎡	60,800 (1시간)	야간 30%	
T4	복합 문화공간	984㎡	98,400 (1시간)	야간 30%	
T6	문화 아카이브	659㎡	65,900 (1시간)	야간 30%	○ 부대시설, 장비 사용료 별도
	옥상마루	157㎡	15,700 (1시간)		
	원형 회의실	164㎡	32,800 (1시간)	야간 100%,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%할인	
	강의실	128㎡	25,600 (1시간)		
	창의랩	106㎡	21,200 (1시간)		
사진·영상 촬영녹화	야외공간	—	13,000 (1시간)	초과시간당 50%할인	○ 영리행위에 한함. 다만,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 가능
공통	입장권 발매행사	—	입장권 발매총액의 10%		○ 시정홍보 및 공원사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 가능 ○ 장소 사용료, 점용료 별도징수

※ 야간 구분

▷ (11월~2월) : 18:00-24:00 ▷ (3월~10월) : 19:00-24:00

○ 장비 사용료

장 소	구 분		보유 수량	금 액(원)
T2 공연장	음향	기본 시스템	- 디지털콘솔 × 1대 - 메인스피커 × 1식 - 무선마이크 × 2개	50,000/식
		모니터 스피커	- 액티브 스피커 × 2대	10,000/대
			- 패시브 스피커 × 2대	20,000/대
		유선 마이크	- 다이내믹 마이크 × 11개	5,000/개
			- 콘텐서 마이크 × 2개	10,000/개
	조명	무선 마이크	- 핸드헬드 × 6개 - 핀마이크 × 2개 ※ 총 6채널, 배터리 별도 지참	10,000/개
		기본 시스템	- 디지털 콘솔 × 1대 - 무대 기본조명 × 1식 - 객석 다운라이트 × 1식	50,000/식
		무빙 라이트	- LED 무빙스팟 × 4대	50,000/식
			- LED 무빙위시 × 9대	60,000/식
		효과용 장비	- 헤이저머신 × 2대 ※ 포그액 별도 지참	20,000/대
T6 원형 회의실	기본음향		- 스피커 및 콘솔 × 1식 - 무선마이크 × 4개	15,000/식
	비디오프로젝터		- 7,000ANSI(LCD) × 1대	15,000/대
T6 강의실 창의랩	기본음향		- 스피커 및 콘솔 × 1식 - 무선마이크 × 4개	15,000/식
	비디오프로젝터		- 3,000ANSI(LCD) × 1대	15,000/대

※ T0, T2(야외무대), T4는 장비 대여 불가

※ 장비이용료는 장소사용료와 합산하여 부과

○ 전기 사용료 및 냉난방 비용

- 냉·난방 및 전기 사용료는 사용량 또는 별도 기준에 따라 부과 가능

[붙임 2] 장소 사용료 환불기준

취 소 일	환 불 비 율
사용예정일 7일전	전액 환불
사용예정일 6~3일전	10% 공제 후 환불
사용예정일 2~1일전	30% 공제 후 환불
사용 당일	환불 불가

※ 도시공원 조례 제19조(요금 등의 환불) 2021.3.25. 개정